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6. 10. 0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복면시위 처벌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요약	3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수정안의 주요 내용	4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6

**본 보고서는 2016년 10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된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입니다.**

- 지난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정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的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반대하고 철회 의견을 제시함.
 -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 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실질적인 대체입법임.
 -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에 반하는 것임.

1.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 정의 수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은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2. 수정안의 배경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혼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 정의 수정에 반대함

양형위원회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뿐 아니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구성요건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행위임.
“계획적인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지표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혹은 그것을 지향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 범행도구를 준비하거나 사전공모, 피해자 유인 등은 물론, 증거인멸의 준비나 도주계획의 수립과 같은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실행양태이거나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반면,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귀찮게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을 피하기 위하여거나 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목적 혹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음. 이는 집회·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평판의 훼손 또는 그 주장에 대한 반대자들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도 포함됨¹.
- 물론 그것이 체포를 피하기 위한 도주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에 해당함. 오히려 그때그때 사안별로 신원확인회피목적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넓은 의미에서 “증거인멸의 준비”에 상당한 것으로 처리하면 충분할 것임².

1 이란 유학생들의 반발레비 시위에서 대학본부측이 복면금지를 명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한 Aryan v. Mackey, 462 F. Supp. 90(N.D. Tex. 1978)은 이의 대표적인 예임. 그럼에도 수정안은 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삼겠다는 것임.

2 영국이 수정안과 같은 인자를 강도죄의 양형인자에 반영하는 방식은 이 점에서 참조할 만 함. 영국은 강도죄(robbery)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가중요소(aggravating factors particularly relevant to robbery)를 거론하면서 “강도의 죄를 범하기 위하여 가면을 착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범죄인의 측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음을 가리킨다”(The wearing of a disguise in order to commit an offence of robbery usually indicate a degree of planning on the part of the offender.)라고 함. 즉,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가 반드시 범행의 계획성을 판단하는 필수요소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계획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침 정도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와 범죄의 계획성의 관계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 Sentencing Guideline Council, “Robbery: Definitive Guidelines,” in http://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web_robbery-guidelines.pdf.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시위에 냉각효과를 야기함.

- 현재의 경찰이 대규모의 대중 집회를 관리하는 행태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음.
- 특히, 대규모 대중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금지처분과 강제해산조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시위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구타하고 감금하며, 체포하고 의울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참가자들의 통제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 행위와 맞물리면서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양형의 가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그러나 신체의 일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무분별한 채증행위의 대상으로 전락함을 의미하게 되고, 또 그에 이어 수많은 형사적, 민사적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임. 이를 감안한다면 결국 시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과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실태가 사실상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이 상황을 오로지 공무집행방해의 범주로만 포섭하고 거기에 신원확인회피목적의 행위들을 양형인자를 해석하는 필요적 지표로 특정하는 수정안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할 것임³.
- 헌법재판소의 결정⁴이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듯,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수정안은 집회참가자의 복장을 양형가중이라는 방식으로 통제함으로써 현재가 확인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까지 침해하게 됨⁵.
- 실제, 미국 등에서 복면금지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는 주된 원인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

3 이는 미국의 다양한 법원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사실임. Tally v. California, 362 U.S. 60(1960); Buckley v Valeo, 424 S. 1(1976) ;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514 U.S. 334(1993)등. 그 외에도 위의 City of Goshen 사건 참조.

4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0헌바67등

5 이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9. 국회의 복면착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2.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위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역시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2003. 10. 30. 2000헌바67, 83(병합)] 취지에 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 집회·시위자들이 착용하는 복면은 신원은닉의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정한 의사의 표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는 복면과 같은 상징적 수단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엄격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헌무효로 선언하고 있음.

- 수정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양형기준요소의 해석기준을 새롭게 신설, 추가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집회·결사의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수정안은 비록 양형기준으로 법관의 해석을 거친다고 하나, 신원 “확인”, “회피” “목적” “신체일부” “가리고” “의도” 등과 같은 불명확개념을 사용하여 가중인자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검찰의 기소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한편, 법관의 재량까지도 지나치게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실제 집회나 시위에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참가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확인”되는 것을 어떻게 “회피”하는 것인지 법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경찰의 채증행위 혹은 교통행정목적의 CCTV로부터의 회피인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시선으로부터의 회피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더불어 “신체일부”는 안면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아니면 안면 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가리키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가리고”的 의미 또한 어느 정도로 시선을 차단하여야 “가리”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음. 예컨대, 착색된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그 농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그에 해당할 것이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경찰, 법관, 혹은 그 착용자를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 모두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음.
-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의 의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는 차단된다고 보고 있음⁶.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인자로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설득력이 없음.
- 현행 양형기준의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에 관한 정의에는 명시적 ‘신원확인회피’라는 정의가 없이 여러가지를 나열하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만 되어 있음. 현재의 양형기준에 의해서도 복면을 착용하였을 경우, 법관은 재판실무에서 신원확인회피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음. 만일 복면상태에서 공부집행방해행위가 더 과격해졌다면 그 과격해진 행위를 가중양형사유로 보면 되는 것임. 따라서 명시적 항목으로 신설하지 않아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현행의 기준을 수정할 명분은 없음.
- 또한 “목적” “의도” 등의 제한요소들도 그것이 적극적, 의지적 지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소위 미필적 목적이나 범죄의 인식이 있는 경우 등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우리 법원의 선례에 비추어보면, 집회시위에 참가하려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동지침이 되지 못함.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여야 하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이 기준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오히려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준의 소환조사를 일삼고 있는 현재의 경찰·검찰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 수정안 자체가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어 경찰·검찰 권력의 의지적 행사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내세운 경찰의 소환조사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사회적 향의가 적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수정안은 국민들 특히 집회·시위의 참가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함. 물론 이는 예상되는 최악의 효과이긴 하지만 이런 최악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입법의 위헌성이나 무효화를 선언하는 경우(소위 미끄러운 언덕 이론slippery slope theory)는 적지 않음⁷.

4)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실질적인 대체입법임

- 수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인권침해의 우려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강고한 반대에 부딪혀 심의조차 되지 못하다 국회임기의 만료로 폐기된 소위 ‘복면금지법안’(집회 및시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이노근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92)의 내용을 양형기준의 형식으로 변경하여 법률 외적인 방법으로 규율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수정안은 식별, 신원확인 등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는 것을 ‘법적’으로 무가치한(즉, 악한)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실상의) 신원확인요구에 복종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양형기준이라는 틀을 통해 사실상 새롭게 설정하고 또 이를 가중된 형벌로 강제하는 것임.
- 즉, 이 수정안은 새로운 행위통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의회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임에도 그것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실질적인 대체입법과 다르지 않음.
-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우회입법 또는 편법적인 의무 설정은 법(률)에 의한 지배 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회유보의 원칙을 정면에서 위반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까지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음.

5)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 수정안이 다른 범죄가 아닌 집회와 시위와 관련성이 높은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신원확인회피목적의 행위를 양형기준요소에 삽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집회와 시위의

7 어떤 국가규제에 있어 최악효과의 발생가능성은 언제나 최상의 효과를 암도할 수 있는 해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E. Lode, "Slippery Slope Argument and Legal Reasoning," 87 Cal. L. Rev. 1469(1999) 참조.

6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실 제공 양형위원회 제74차 회의록 3페이지 참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중시킴.

- 신원을 은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해진 범죄가 비난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임. 하지만 복면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의 불법성을 중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며 다른 범죄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비난가능성을 가지거나 혹은 강도나 성폭행범죄의 경우처럼 그보다 더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유독 공무집행해 범죄군에만 적용하려고 함.
- 실제 어떠한 범죄에서도 신원확인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를 양형인자화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없음. 그럼에도 오로지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에 대해서만 이런 인자요소를 신설하여 삽입함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뿐 아니라 체계정합성의 요청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정안의 숨은 목적, 즉 집회·시위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통제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만듬.

6) 의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에 반하는 것임

- 수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는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함. 따라서 그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명시적 유보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을 뿐임
- 어떠한 국민도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신원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공무원에 대해서까지도 드러내어야 할 의무는 없음. 특히 우리의 형사법제는 괴고인이나 피의자는 물론 범죄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 혹은 범죄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자신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야 할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수정안은 신원확인 등을 회피하는 것을 일괄하여 ‘법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는 이를 형별의 필요적 가중요소로 삼고자 함. 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의무를 양형기준이라는 틀을 통해 사실상 새롭게 설정하고 또 이를 가중 사유로 처벌하는 것임
- 실제 현재처럼 고도로 발전한 안면 인식 기술 등의 IT기술을 감안할 때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다닐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원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임. 그럼에도 수정안처럼 신원 은닉 행위를 양형 가중 인자로 구성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이 가중 인자의 적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안면정보, 신체정보를 반드시 노출하여야 한다는 당위에 봉착하게 됨. 공무를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를 만나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복면이나 변장 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임.
- 물론 목적이나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건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요건들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부담은 온전히 이 개개인들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과도함.

- 결국 수정안은 관련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행위양태로 포섭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행위(신분확인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는 행위)에 대하여 무가치판단을 내리고 공무의 집행에 즈음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들은 잠재적인 공무집행방해자일 수 있다-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나 확인시킬 수 있는 상태로 노출할 것을 강제함.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결국 국가로부터 자신의 신원을 제출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하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양형기준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에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하는 것은,
 -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실질적인 대체입법임.
 -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자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발행일 2016. 10. 05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보학 교수)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jw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